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2

발의연월일: 2020. 12. 10.

발 의 자:최춘식·정희용·박대수

김희곤 • 이달곤 • 서범수

구자근 • 이종배 • 김용판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 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2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 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벌칙)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u>5년</u>	<u>7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	<u>7천만원</u>
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28조의2(「형법」상 감경규정
	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
	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2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u>다.</u>